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7
----------	-----

제출년월일 : 1998.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 안 이 유

- 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기준은 인구, 면적등 행정수요에 따라 책정되며 파주시는 종전 19과에서 18과로 1개과를 축소토록 조정되었음
- 따라서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기구의 신설 또는 통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 요 골 자

-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실로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총무국산하 문화체육과로 조정(안 제3조)
- 나. 총무국에 시민과 신설(안 제4조 제1항)
- 다. 사회산업국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산업과와 축산과를 농축산과로 통합하고, 녹지과를 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회산업국 소속으로 조정(안 제5조 제1항)
- 라. 건설도시국을 건설국으로, 주택과를 건축과로, 수도과를 상하수도과로 명칭변경(안 제6조 제1항)
- 마. 산업과 업무중 식량작물 증산, 농기계관리, 병충해방제업무를 농촌 지도소로 이관(안 제5조 제5항)

5. 과세 표준액 조사

6. 지방세 세무조사

7. 세외수입원의 발굴 및 조정, 징수

8. 기부금품 모집접수 및 통제

9.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 및 검사

10. 기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업무

⑤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도비 및 일반·특별회계 출납과 결산

2. 청사유지 보수 및 시설물 관리

3. 공사의 도급계약, 용역 및 기타계약

4. 물품의 구입, 수선, 제조 계약

5. 관용차량 및 운전원 관리

6. 지출원 사무

7.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관리 및 재정보증

8. 국·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대부 및 관리

10. 기타 세출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⑥문화체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2. 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관리

3. 문화사업 및 예술행사

4. 시지 및 시사 편찬

5. 관광사업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6. 관광지 조성계획의 시행 및 허가

12.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13. 조례, 규칙, 훈령, 예규등 자치법규의 제정·개폐 심사 및 공포

14.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사건의 관리

15. 지시사항 처리 및 종합관리

16. 기타 기획, 공보, 예산, 감사, 자치에 관한 사무

제4조(총무국) ①총무국에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둔다.

②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과소관 업무의 기획 조정

2. 공무원 해외연수 업무

3. 공무원 후생관리

4. 의전 및 의식행사

5. 공무원 임용 및 관리

6. 행정구역 조정 및 관리

7. 통, 리, 반 조직운영 및 지도

8. 지역 상황보고 및 여론 관리

9. 조직운영과 인력에 관한 사항 관리

10. 각종 선거사무

11. 공무원 교육훈련 및 시행

12. 각종 위원회 관리

13.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시설유지 관리

14. 전산 교육훈련 실시

15. 각종 전산프로그램 연구 보급

16. 행정전화, FAX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17. 통계조사 업무

③시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
2. 민원사무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3. 진정·고충·건의민원 처리
4. 민원행정지도, 감독등 전반에 관한 사항
5. 단순·복합민원 접수
6.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7. 식품접객·판매업 신고
8. 민원공인의 관리
9. 국민운동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사항
10.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11. 자원봉사 활동계획수립 및 단체지원
12. 호적부의 관리
13. 호적제신고의 처리
14. 주민등록 관리 및 전산업무
15. 외국인 등록 업무

④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도세, 시세) 부과사무
2.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3. 지방세징수관리
4. 지방세 체납액 관리사무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 사무의 대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실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총무국, 사회 산업국, 건설국을 둔다.

제3조(기획실)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2. 기본운영계획수립과 심사평가
3. 시정보도 및 정부시책 홍보
4. 자치법규의 공보게제, 공포, 공고, 고시
5. 예산편성 및 운용
6.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관리
7. 경영수익사업 지도
8. 시 행정의 감사
9. 복무단속 및 하부행정 기관의 지도 감독
10. 의회관련 업무
11. 진정서 처리 및 비위조사 업무

7. 한미친선협의회 운영
8.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9. 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수립 추진
10.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지도 감독
11. 도서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12. 이동도서관 운영
13. 새마을 문고 관리
14. 독서진흥 시책 사업 추진
15. 기타 문화, 관광, 체육,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⑦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방위 비상대책 수립·시행
2. 민방위 시설의 확충 및 장비의 유지관리
3. 국가 비상사태(총무계획·을지연습)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4. 민방위교육훈련 계획 수립·시행
5.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시행
6. 민방위대 조직·편성운영
7. 재난 관리 계획 수립
8.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9. 재난대비 동원계획 수립
10.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관리
11. 주요시설물 점검 및 조치
12. 제1국민역 자원관리
13. 징병검사

14. 병력동원 소집 및 전시근무소집 계획수립 및 집행
15. 향토예비군 편성관리
16. 군복무필자 병적관리
17. 기타 민방위, 재난, 병무에 관한 사항

제5조(사회산업국) ①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를 둔다.

②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복지시책의 수립 추진
2. 구호용 물자, 금품의 수급 및 관리
3. 장애인 시설 관리
4. 원호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생활보호 및 취로사업
6. 저소득층 의료보호 업무
7. 사회복지법인 지도 감독
8.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지도 감독
9. 노인복지사업
10. 노인수용시설 운영의 지도 감독
11. 의례업소 지도 감독
12.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추진
13. 여성회관 관리
14. 여성단체 육성지도 및 관리
15.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교양지도
16. 식품의 제조, 즉석가공, 판매업소 허가 및 지도 감독

17. 식품접객업소 허가 및 지도 감독

18.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관리

19. 불법묘지 단속

20.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허가 및 관리

③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2. 하천감시 및 수질 관리

3.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4. 자연환경 보전 업무

5.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시설(변경)허가 및 신고

6. 배출업소 관리 및 환경관리인 관리

7.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관리

8. 소음, 진동, 먼지등 생활공해방지 업무

9. 수질오염조사 및 감시

10. 유독물 취급업소 지도 단속

11. 청소행정 종합계획 수립 추진

12. 쓰레기 종량제 추진

13. 생활폐기물 관리 및 지도단속

14. 농촌 및 관광유원지등의 쓰레기 대책업무

15.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지도 감독

16.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 단속

17.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설치 관리

18. 분뇨·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19. 환경관련시설 기술업무 지도 점검

20. 사업장 폐기물 지도 단속

④기업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가안정관리

2. 담배소매업 지정업무

3. 유통업(대형, 소형, 시장) 관리

4. 방문 및 다단계 판매 관리

5. 부정경쟁 방지 업무 (상품권, 위조상표, 가격표시)

6. 새마을 금고 관리

7. 노정관리

8. 중소기업육성

9. 실업대책추진

10. 계량기, 공산품 단속

11. 기업인협의회 지원

12. 공장설립(변경)승인

13. 공장등록(변경) 신고

14. 지방산업단지 분양

15. 광산업무

16. 승강기 관련 업무

17. 액화석유가스, 도시, 고압가스 관련 업무

18. 에너지 관련 업무

19. 석유 판매업 등록

20. 전문건설업(보일러, 가스시공업) 관리

21. 전기관련업무

⑤농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시행
2.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계획 수립
3.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
4. 양곡 및 부산물의 수급조절, 보관, 가동, 조작, 수송에 관한 사항
5. 추곡수매
6. 쥐잡기 사업
7. 양곡유통질서 확립 및 곡가조절
8. 농업진흥지역 지정운영
9. 농지전용허가
10. 불법농지 단속
11. 분배농지 관리
12. 농지 이용계획 수립 시행
13. 농지전용신고
14.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15. 농지전용 사후관리
16. 농산물 유통(직거래) 사업 추진
17. 축산물 가격안정 대책 추진
18. 부정 축산물 단속

19. 육류 및 축산물 가격조사 및 관리
20. 축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
21. 내수면어업 개발계획 수립 시행
22. 낚시터 및 양어장 관리
23. 부정어업 단속
24.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5. 축산단체 지도육성 및 관리
26. 가축분뇨처리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27.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 재배 기술지도
28. 낙농 진흥 기본계획 수립 추진
29. 축산단지 조성 및 관리
30. 초지조성허가 및 사후관리
31.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32. 우유수급조절 및 소비에 관한 업무
33. 축산경영 진단사업 및 모니터농가 지정 관리
34. 사료수급 및 유통관리

⑥산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육림사업
2. 조림사업
3. 보전임지전용허가 및 관리
4. 채석허가 및 사후관리
5. 보안림 관리
6. 산림형질 변경허가

7. 임업협동조합 지원

8. 양묘사업

9. 산림보호단속

10. 산불방지종합대책

11. 푸른산사랑운동(산지정화) 추진

12. 임도 시설 및 보수 관리

13. 공유임야 관리

14. 주요도로변 공원 및 조경수목 관리

15. 도시계획지구내 공원관리

16.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관리

17. 산림병해충 방제

18. 녹지 및 공원조성 종합계획 수립 시행

19. 보호수 관리

20. 국토공원화 계획 수립 시행

21. 산림 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

제6조(건설국) ①건설국에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를 둔다.

②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

2.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추진

3. 하천의 이용 및 감시

4. 지하수의 이용 및 개발

5. 전문건설업체 관리

6. 하천편입용지 보상
7. 국유재산 관리
8. 골재 관련 업무
9. 공유수면 관련 업무
10. 농업용수원의 개발보존 관리 및 관계개선
11. 농어촌 정주권 사업
12. 도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13. 토목공사의 측량·설계·시공 지도 감독
14. 도로, 교량 개설 및 개량
15. 도로 안내판의 설치 및 보존 관리
16.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17. 집도구역 관리
18. 자연재해의 예방과 방지대책 및 복구
19. 하천의 보존관리 및 공작물 설치 관리
20. 하천기성제 유지관리
21. 소하천 유지관리
22. 새마을 농촌건설사업
23. 종합복지회관 관리
24. 비법정 도로·교량개설 및 개량
25. 민북지역 정책마을 조성
26. 대성동 국기계양대 및 국기보존관리
27. 기타 지역개발에 관한사항

③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에 관한사항
 2. 도시계획 재정비
 3.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사항
 4. 도시재개발 사업
 5. 토지형질변경허가
 6.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7. 지역개발정책의 종합계획수립 조정
 8.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조정
 9.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 조정
 10.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11. 온천지구 개발
 12. 옥외광고물 관리
 13. 토지구획정리 사업
 14. 도시계획사업 추진
 15. 소도읍가꾸기 사업추진
 16. 택지개발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17.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④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관리
3. 건축허가
4. 공동주택 허가
5. 건축사 관리

6. 건축심의

7. 위법,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

8.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9.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 및 조치

10. 주택자재 생산업 등록 및 관리

11. 가설건축물 허가

⑤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2. 버스운송사업인가·면허관련 업무

3. 택지버스노선 관리

4.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 조정

5. 운수사업체종사자 교육

6. 자동차운송사업체 지도 감독

7.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8.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지도 단속

9. 주차장 화충 등 주차장 관련 업무

10. 자동차 관리법인 허가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11.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

12.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

13. 자동차 등록

14. 이륜자동차 등록

15. 자동차 압류, 말소, 저당설정(말소) 등록

⑥상하수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
 3. 상수도 사용료 및 각종 세입의 부과징수
 4.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인가
 5. 간이상수도 시설 관리
 6.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
 7. 상수도 시설 증설, 확장공사
 8.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시설의 유지관리
 9.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조정
 10.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11. 하수종말처리 시설 유지 관리
 12. 마을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
- ⑦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2.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3.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조사
4.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5. 소유권 확인 국가소송에 관한 사항
6. 지적공부 등본발급 및 열람
7. 소유권 명의 변경 및 등기필통지 관리
8.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9. 지적업무 전산자료 관리 및 운영
10. 지적공부 보존 관리

11. 지적 민원 처리
12. 지적 측량 검사
13. 토지 분할 허가
14. 지적공부 조제 및 재조제 업무
15.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 단속
16. 건축물 대장 신규작성 및 말소, 폐쇄
17. 건축물 표시(변경, 정정) 신청 처리
18. 건축물 현황도 관리
19. 건축물 대장 발급 및 열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